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,
그리고 선배·동료위원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2선거구 이병도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‘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
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
리겠습니다.

최근 들어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
가운데, 학교 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지에 대
해 반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

정신적·신체적으로 아직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학교
폭력의 당사자가 된 학생들에 대한 어른들의 책임감은 지
금보다 더 높아지더라도 부족하지 않습니다.

학교폭력은 성인이 되어서도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상처입니다. 그렇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

이에 경미한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때, 학교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자체해결 권한을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여 문제 해결의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.

또한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 당사자들도 우리 서울시의 학생들이기에, 이들의 학생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여 백년대계를 실천하는 서울시로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

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